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CONTENTS

I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 소개	006
2020 한국예술인복지사업 사업 개요	008

II . 2020 예술인복지사업 상세 안내

창작준비금 지원-창작디딤돌	012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014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022
예술인 신문고	024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028
예술인 심리상담	032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036
예술계 성폭력 예방 지원	038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040
예술인 산재보험	044
예술인 의료비 지원	048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052

III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060
예술인패스	062



1.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재단소개	006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개요	008

재단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벌마크는

행복한 예술인의 웃는 표정을 의미합니다. 예술인(Artist) 복지(Welfare)의 머리글자 AW를 형상화했습니다.



사업 영역



창작역량강화

창작준비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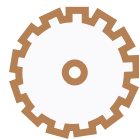
불공정관행개선

예술인 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법률상담, 심리상담,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성폭력 예방지원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회안전망구축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의료비 지원



예술활동증명 및 기반 조성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내용개요	지원자격	공고일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디딤돌	· 창작준비금 지원 - 1인당 연 300만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예술인 * 참여제한 - 고용보험 상용 가입 예술인 - 2019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예술인 - 2020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1차) 2월 (2차) 7월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 리더예술인 - 예술로 협업사업 총 910만원(6.5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 총 560~840만원(4~6개월) · 참여예술인 - 예술로 협업사업 총 720만원(6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 총 480~720만원(4~6개월)	· [예술로 협업사업-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참여제한 - 2020년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지원금 수혜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연속 5회 이상 참여자 -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예술로 협업사업-참여기업·기관·마을]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한 이슈 해결 및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마을	2월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예술인 자녀 대상 - 돌봄센터 2개소 운영	· [예술로 기획사업] - (예술인, 참여기업·기관·마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리더 예술인, 참여 예술인 및 기업·기관·마을이 한 팀이 되어 예술을 통한 기업·기관·마을의 이슈 해결 및 혁신하고자 하는 그룹 * 각 팀별 기업·기관·마을 1곳, 리더예술인 1인 및 참여 예술인 3인 이상~5인 이하 구성 * 각 팀별 2가지 이상 예술장르 혼합 구성 필수 (단, 예술장르는 예술활동증명상 장르 구분에 따름) · [예술로 지역사업] - 협력 광역문화재단 선정 (4~5곳) * 기관별 예술로 사업 추진	상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예술인 자녀 대상 - 돌봄센터 2개소 운영	· 이용 : 예술인 자녀(24개월~10세) · 운영 : 화요일~일요일 (요일 운영시간 상이, 사전확인 필요) · 요금 : 시간당 500원 · 위치 : 서울 대학로 소재(반디돌봄센터), 서울 망원동 소재(예술인자녀돌봄센터)	상시

사업명	지원내용개요	지원자격	공고일
예술인 신문고	· (상담·신고·조사·조정·소송)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거부·지연 등 불공정행위	·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상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	· 현업·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지원	· 현업 종사자 및 관련 협단체 · 예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	상시
예술인 심리상담	· [개인 프로그램] 심리검사, 상담(12회 한도) · [단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 비용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3월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 [피해신고상담 접수] · [피해 지원 연계]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기타 관련기관 연계	· 성폭력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 신고상담은 예술계 종사하는 피해자, 대리인 (개인 및 관련 단체 등) 모두 신청 가능	상시
예술인 성폭력 예방 지원	· 현업·예비예술인을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	· 현업종사자 및 광역 협단체 · 예술관련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부서 및 단과대학 · 전문강사 : 예술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종사자, 협단체관계자	상시 상반기 중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의 40~50% 지원 (보수 179만원 한도)	·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 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 · 예술단체/사업자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인과 계약 을 체결	3월
예술인 산재보험	·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 · 납부보험료 50~90% 환급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보험 료를 납부한 예술인	상시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1인 최대 500만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상시 (*사업안내 페이지 확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500만원) · 예술인전세자금대출 (최대 8,00만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정기

* 상시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됩니다.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 . 2020

예술인복지사업
상세 안내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창작준비금 지원-창작디딤돌	012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014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022
예술인 신문고	024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028
예술인 심리상담	032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036
예술계 성폭력 예방 지원	038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040
예술인 산재보험	044
예술인 의료비 지원	048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052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디딤돌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예술 활동을 준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사업명	2020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대상	예술 창작 활동을 준비 중인 예술인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가구원* 소득인정액 120% 이내인 예술인 * 가구원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월):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금액	2,108,633원	3,590,376원	
- 가구원 소득인정액 합산 금액이 위의 기준금액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일용 고용보험 가입은 예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재단이 지정한 기간(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동안, 등본 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2019년도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일반/원로) · 2020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제한대상자'인 예술인 		
지원규모	300만원 (1인당)		
지원인원	12,000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을 확인해 주십시오.

※ 2020년부터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 통합 운영됩니다. 만 70세 이상 예술인은 사업 신청 시 '원로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자격 요건 충족 우선 선정됩니다. (배점제 미적용)

※ 장애예술인은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배점제 미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심의	발표	교부	보고	종료
· 예술활동증명 유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행정심의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사 · 배점합산	· 심의결과 개별 공지(문자 메일 창 작준비금시스템)	· 창작준비금 교부	· 활동보고서 제출 · 원로예술인의 경우 사업신청시 교육과정 수료로 대체	· (승인) 사업 종료 · (미제출 또는 미 승인)우리재단사업 참여 제한

선정 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①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②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③부문별 배점 합산을 통해 최종 선정

배점기준표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분위	기준 중위소득 0 ~ 50%	8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기준 중위소득 51 ~ 100%	7	
	기준 중위소득 101 ~ 120%	6	
기타	최초 수혜자 ¹⁾	2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연계
	지역 예술인 ²⁾	1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예술인

제출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1부, 통장 사본 1부

신청 방법

우편, 온라인
 ※ 해당 사업 공고 시,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 02-3668-0200, www.kawf.kr
 창작준비금지원 서류안내 모바일웹 http://ready.kawfartist.kr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적 사회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술가 스스로의 예술적 개입으로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구현합니다.

예술로 협업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사업기간동안 예술활동증명은 유효하여야 함

- (중복사업참여제한)

- ①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사업에 선정 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 ②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5년 이상 연속 참여자(2014~2019년 참여자 및 2015~2019년 참여자)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연속 참여 제한

- 퍼실리테이터,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등 역할에 대한 구분 없이 적용
- 2020년도부터 단계별 도입 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참여시 1년간 참여 제한 실시

연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제한자	비고
2020년	5년 이상 연속 참여자	(2014/2015년~2019년)
2021년	4년 이상 연속 참여자	(2016/2017년~2020년)
2022년	3년 이상 연속 참여자	(2018/2019년~2021년)
2023년~	3년 연속 참여자	

참여기업·기관·마을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한 이슈를 해결,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마을
- 예술협업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마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지원신청 제한 기업·기관·마을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 기관의 소속단체
- *단, 종교법인이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허용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
-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예술관련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섭외하기 위해 신청하는 기업·기관·마을
- 기업·기관·마을이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 요구하는 기업·기관·마을
- *단, 협업활동에 대한 금전적, 물질적 보상(저작권 관련 수익 분배, 협업활동 후 보상이 포함된 추가 활동 보장 등)을 예술인과 합의한 경우 허용

사업구조

공모를 통한 참여기업·기관·마을 발굴 및 예술인 매칭

사업별
추진체계

구분	시기별 단계						
	2월	3월		4월	5~10월		11월
예술로 협업 사업	사업공고	참여기업· 기관·마을 / 리더 예술인 모집	참여기업· 기관·마을 / 리더 예술인 선정 발표	참여 예술인 모집 및 선정 발표	기업·기관· 마을 - 예술인 매칭	예술협업활동 진행 (리더예술인) 4월 중순~10월 (참여예술인) 5월~10월	결과 보고 / 사업 종료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910만원 - 사전활동기간(0.5개월) : 7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월 140만원	· 총 72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월 120만원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및 직업역량 강화 직무교육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선정심의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 (심의절차) 1차 심의 (서류) 및 2차 심의 (면접) 후 기업·기관·마을 매칭 완료자에 한해 최종 선정
 - ※ 2차 심의 (면접) 선정자에 한해 기업·기관·마을 매칭 기회 부여
- (심의방법)
 - ① 1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평가항목별 부합여부 배점심의
 - ② 2차 면접심의 : 서류심의 통과자를 대상으로 소통 및 문제해결능력, 기획 및 성과관리 또는 협업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의
 -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참여기업·기관·마을

- (심의절차) 서류심의를 통해 우선매칭대상 기업·기관·마을 선정 후 리더예술인과 매칭된 기업·기관·마을에 한해 최종 선정
 - ※ 단, 연계기관을 통해 접수된 참여기업·기관은 별도 심의 없음
- (심의방법)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사업의 이해, 예술적 개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이슈의 내용, 예술인에 대한 추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종합심의
 -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활동내용

리더예술인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참여기업·기관·마을을 매개하여 예술협업활동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

- 담당 참여예술인들이 수행하는 예술활동 조력, 개입 (월 10일, 3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월 1회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참여예술인 개별 프로젝트 활동 성과관리 및 기록 (다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행사 참여

참여예술인

리더예술인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매칭된) 기업·기관·마을과 예술적 협업 제안 및 진행 (월 10일, 3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월 1회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활동내용 기록 (다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참여기업·기관·마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과의 예술협업 프로젝트 운영

- (매칭된)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과 예술적 협업 진행
- 예술협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활동 공간, 제작비, 운영비, 부대 활동비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제출서류 및 방법



예술로 협업사업 |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 (제출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및 포트폴리오(지정양식) 각 1부
 -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제출
- (제출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문의처

-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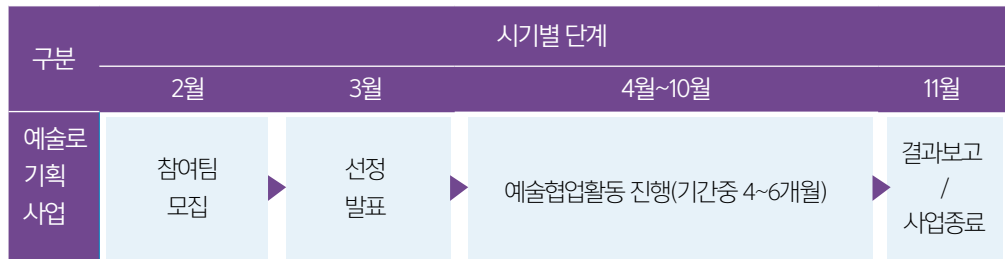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예술로 기획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로 협업사업-예술인, 참여기업·기관·마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리더예술인, 참여 예술인 및 기업·기관·마을이 한 팀이 되어 예술을 통한 기업·기관·마을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룹
- (A타입)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서 함께 활동했던 팀
(※ 예술인 구성은 일부 변경가능)
- (B타입) 새로운 예술협업방식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규팀
- ※ 각 팀별 기업·기관·마을 1곳, 리더예술인 1인 및 참여예술인 3인 이상~5인 이하 구성
- ※ 각 팀별 2가지 이상 예술장르 혼합 구성 필수 (단, 예술장르는 예술활동증명상장르 구분에 따름)

사업별 추진체계



지원 규모 및 내용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560~840만원 - 활동기간(4~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 회당 280만원	· 총 480~720만원 - 활동기간(4~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 회당 240만원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직업역량강화 직무교육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 지원

선정심의

- (심의절차) 1차 심의(서류) 및 2차 심의(PT) 후 최종 선정
- (심의방법)
 - ① 1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평가항목별 부합여부 배점심의
 - ② 2차 PT심의 : 서류심의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협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추진주체의 역량 등을 종합심의
-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활동내용

리더예술인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참여기업·기관·마을을 매개하여 예술협업활동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

- 담당 참여예술인들이 수행하는 예술활동 조력, 개입(2개월 내 20일, 6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격월 팀 활동보고서 및 개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참여예술인 개별 프로젝트 활동 성과관리 및 기록(다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행사 참여

참여예술인

리더예술인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기업·기관·마을과 예술적 협업 제안 및 진행(2개월 내 20일, 6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격월 팀 활동보고서 및 개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활동내용 기록(다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참여기업·기관·마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과의 예술협업 프로젝트 운영

-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과 예술적 협업 진행
- 예술협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활동 공간, 제작비, 운영비, 부대 활동비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제출서류 및 방법



예술로 기획사업

- 팀 별 리더예술인 신청
- (제출서류) 사업참여신청서, 협업활동계획서, PT자료 각 1부
 - ※ PT자료의 경우, 서류심 이후 PT심의 대상 팀에 한하여 추가 제출
 -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제출
- (제출방법) 예술인파견지원 매칭시스템(<http://goartist.kawfartist.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
 - ※ 지원신청 전, 함께 참여하는 기업·기관·마을의 매칭시스템 가입 필수

문의처

-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예술로 지역사업

사업구조

광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관별 예술로 사업 추진
※ 세부내용 추후 공지

사업별 추진체계

구분	시기별 단계				
	2월	3월	4월	5~10월	11월
예술로 지역사업	광역 문화재단 선정	광역문화재단별 예술로 사업 추진			결과보고 / 사업종료

지원규모

광역문화재단 5개 내외
※ 기관 당 사업운영비 및 (예술인)활동비 지원 예정

제출서류 및 방법



예술로 지역사업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예정)
- (제출방법) 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 ※ 예술로 지역협력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의 경우, 해당 광역문화재단을 통해 추후 확인

문의처

-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예술인에게는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돌봄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돌봄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용대상

24개월 ~ 10세 예술인 자녀

※ 단,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12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센터 소개

구분	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단체와 극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 주택에 위치 유기농 식자재를 활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및 간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이 집처럼 뛰어놀 수 있는 주택 유기농 재료로 만든 가정식 식사 및 간식 제공
위치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2길 19, 1층(이화동 4-1)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버스 100, 109, 143, 150, 160, 273, 301, 710, 2112 통신대 하차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4 (망원동 473-30) ·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5번출구 도보 2분거리 · 버스 7011, 271, 7733, 163, 601, 606 마포구청 하차
시설규모	28평 (방2, 주방1, 화장실1)	54평 (방3, 주방1, 화장실2, 학부모공간)
운영인력	센터장 1인, 돌봄교사 5인 교대근무	센터장 1인, 돌봄교사 5인 교대근무
운영시간	· (화~금) 13:00~22:00 * 월요일 휴무 (토) 09:00~22:00 (일) 09:00~20:00 · 단, 23시까지 돌봄 필요시 1일 전 사전예약	· (화~일) 11:00~20:00 * 월요일 휴무 · 09:00~11:00, 20:00~22:00 돌봄 필요시 2일전 사전 예약
프로그램	미술활동, 요리활동, 동화구연, 신체활동 등	영유아~아동의 자기주도적·연령통합적 놀이 프로그램 운영
전화	02-741-0347	02-3143-1919
온라인	http://cafe.daum.net/bandicare	http://cafe.naver.com/yebomcenter
위탁단체	참여성노동복지터	YMCA서울아가야

이용방법



- 각 돌봄센터 문의 후 회원가입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가능)
- 사전예약제 운영 (하루 전까지 예약, 전일이 휴관일일 경우 2~3일 전 예약)
- 24~48개월의 유아는 전담인력 배정을 위해 1일전 예약 필수
- 긴급한 경우, 10~13세 (초등생)인 형제자매를 동반할 경우 사전 문의 필수

문의처

- 반디돌봄센터(서울 대학로) 02-741-0347
- 예술인자녀돌봄센터(서울 마포) 02-3143-1919
- 예술인지원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신문고

예술활동 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 (One-stop System)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시행령 제3조의3)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불공정행위의 유형>

- 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②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③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④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관련법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 행위의 금지), 시행령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관련 서면계약서로 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절차를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불공정행위/(구)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지원내용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톱 지원 (상담, 신고, 피해구제 등)
-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내 법률 등 전문가 배치, 예술분야별 특화 상담 제공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검토 등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원절차

업무내용	처리기관	내용
상담컨설팅 불공정행위상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센터)	• 예술활동 중 계약, 저작권, 불공정행위 관련 전문 컨설턴트 의 상담 지원(온라인 및 대면 상담)
신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 담센터)	
사실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내용 확인, 기초 사실관계 조사, 자료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사실조사 실시 •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위원회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조사보고서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 조정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 ※시정명령 내용 :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사실 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1호(불공정한 계약 등 강요 행위) 사건 중 「공정거래법」적용 대상 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 서면계약서 미작성 시 시정 조치 명령 • 서면계약서 미작성 및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소송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지원의 실효성 등 검토 후 소송비용 지원 (1인당 최대 20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상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이상인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지원

예술인 신문고

신고접수기관

장르	신고처	신고 및 문의	비고
모든 장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www.kawf.kr 02-3668-0200	
방송	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www.kbau.co.kr 02-784-3411	
	기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www.hanbit.center 1833-8261	
	창작	방송작가유니온 www.writersunion.kr 02-6956-0050	
대중음악	대한가수협회 www.singer.or.kr 02-780-2783		각 기관 신고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실조사 및 소송지원
연극	한국연극협회 www.ktheater.or.kr 02-744-8045		
		서울연극협회 www.stheater.or.kr 02-765-7500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www.kmusical.kr 02-765-5598		
만화	한국만화가협회 www.cartoon.or.kr 02-757-8485		
영화	영화인신문고	www.sinmungo.kr 02-2272-1505	영화인신문고 자체 지원

신고접수기관

분야	기관명	신고 및 문의	내용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www.kofic.or.kr 1855-0511	한국영화산업 내에서 발 생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법률지원 등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불공정행위신고	www.kocca.kr 070-5167-3500	문화산업 관련법령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 및 법률지원 등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02-2669-0042(조정) 1800-5455(②번, 문화예술 인 전문상담)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조정 및 상담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p>법률/계약/ 불공정행위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알림상담 ⇨ 아래의 각 메뉴 · 법률상담 : 알림상담 '상담·컨설팅' 메뉴 · 서면계약 상담 : 알림상담 ⇨ 예술인신문고 ⇨ '서면계약 상담' 메뉴 · 불공정행위 상담 : 알림상담 ⇨ 예술인신문고 ⇨ '사전상담' 메뉴 · 이메일 : sinmungo@kawf.kr · 전 화 : 02-3668-0200(방문상담시 사전예약 필수)
<p>불공정행위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알림상담 ⇨ 예술인신문고 ⇨ '신고하기' 메뉴 · 전 화 : 장르별 신고처(10개) *일부 기관은 온라인 신청 가능 · 방 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02-3668-0200, www.kawf.kr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9개 분야 57종의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올바른 계약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현업 종사자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관련 협단체
- 예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 (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 기타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사업체 등

지원내용

-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 연2회 (상/하반기 각 1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공동개최 (일정 추후 공지)
- <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 주 제 :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및 노동법
 - 강 사 : 법률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저작권 전문가, 현장 전문가, 재단 직원 등
 - 강의시간 : 1회, 2시간
 - 필수교육 : 법률 지식 및 표준 계약서 등
 - 추진절차 : 특강을 원하는 대학(기관)에서 재단에 신청 (협의 후 공동개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특강신청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 섭외 · 강사료 및 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 장소 및 기자재 제공 · 모집 및 홍보


- 참고사항 : 신청 기관, 강의 요구 사항 등에 따라 내용 및 방식 조정 가능
-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온라인 교육
 - 수강신청 방법 :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http://kawf.khcu.ac.kr/>) 회원가입 후 신청 (수업료 무료)
 - 교육내용 저작물과 저작권,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문화예술계약,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시 대응방안 (총 5차시, 강의시간 각 30분)

- <찾아가는 저작권과 계약실무 교육>
 - 각 분야별 맞춤형 특강 개최 (협단체, 유관기관 등 요청 시)
 - 강사 : 변호사, 저작권 전문가, 현장 전문가, 재단 직원 등
 - 강의시간 : 요청기관 협의 후 결정 (1~3시간)
 - 참고사항 : 원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컨설팅' 병행 운영 가능 (예술인신문고, 법률상담-컨설팅 연계)

대상별
지원 구분

분야	내용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의 강의 진행 - 표준계약서 소개 및 활용사례, 계약체결 시 유의점 -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예비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특강 - 저작권 기본개념 및 표준계약서의 이해 - 계약서(분야별, 계약별) 작성 시 유의점 및 현장사례 - 예술계의 법적환경 이해 : 문화예술 관련법과 예술인의 권리 등 · 예비예술인을 위한 노동인권 및 노동법 특강 -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및 노동법 기초

신청 기간
및 방법



-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동 주최)
 - 교육 접수 기간 (상·하반기 각 1회) 중 온라인 접수
- 현업·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지원 :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서 (부서책임 자 날인) 작성 후 이메일 제출 (contract@kawf.kr)
- 문의처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02-3668-0200, www.kawf.kr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현황

보급 중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분야	표준계약서
미술 (11종)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전속계약서 (매니지먼트 계약서),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대관계약서,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영화 (9종)	표준 상영계약서 (2종),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4종), 표준근로계약서 (2종), 영화투자표준계약서
대중문화 (6종)	대중문화예술인 (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공연예술 (4종)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창작, 출연),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근로, 용역)
만화 (6종)	출판계약서, 전자책 (e-Book)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저작권재산권 위임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
애니메이션 (4종)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출판 (7종)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저작권 (4종)	저작권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권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방송 (6종)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표준근로·하도급·업무위탁),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창작활동 중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창작의욕 고취 및 예술활동 증진을 도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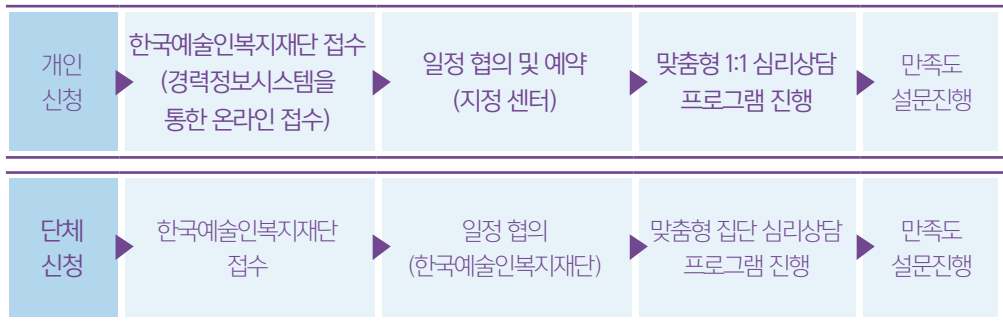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개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 종전 개인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 기존 예술인 힐링프로그램 참여자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단체)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지원내용

- 예술인 심리상담 (개인의 경우 최대 12회 까지) 및 심리검사 지원
(상세 내용은 사업신청 페이지 참조)
 - ※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상담비용은 지정기관으로 지급

지원절차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11.30.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 신청방법

개인 프로그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알림상담-예술인 심리상담-심리상담 신청 (개인정보수집, 심리상담 참여동의서 내용 숙지 및 동의 필수)
집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counseling@kawf.kr)로 신청서 접수 · 집단 프로그램 기획 시, 사업공고를 통해 별도 신청방법 안내

- ① 지원신청서 ② 동의서 ③ 사전질문지
-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신청 시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음

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 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대인관계, 부부·가족문제 · 경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집단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대처훈련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불안·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예방 및 위기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 상담 (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집단상담 (스트레스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 교육 등 (게이트키퍼 교육)

문의처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2020년 예술인 심리 상담 지정기관

권역	기관명	전문가	주소	전화번호
수도권	그랑조행복찾기심리상담센터 (http://happycenter7.com)	조현섭	서울 서초구 잠원로 8길 25 래미안팰리스상가 4층	010-6335-0391
	다움심리상담센터 (www.daumcc.com)	이은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 대정프라자 602호	02-2672-1377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www.mesc.co.kr)	조성민	서울 중구 퇴계로 32길 22 1층	02-821-5953
	마음의숲심리상담센터 (www.mindforest24.com)	박준영	서울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대림아크로텔 2510호	02-2187-7499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서울) (www.semiraemind.com)	손명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6길 26 태창빌딩 3층	02-2295-5574
	새봄심리상담연구소 (newspring2017.com)	신영주	서울 마포구 독막로 295 삼부골든타워 1006호	010-3565-7294
	세인임상심리연구소 (www.seinpsy.com)	이기련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84 현대레이크빌 306호	02-6287-1275
	심리상담연구소 함께 (blog.naver.com/with_urlife)	윤 영 박희경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A동 408호	02-2104-6833
	이수심리상담센터 (www.esupsy.co.kr)	전진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 디오슈페리움 오피스텔 1706호	02-523-5283
	이화심리상담센터 (www.ewhachild.co.kr)	전현민	서울 도봉구 창동 331-2 중앙빌딩 4층 402호	02-999-5232
	임선영 심리상담연구소 (www.limcounseling.com/)	임선영	서울 양천구 목동로 293 현대41타워 2907호	02-6671-9090
	한국상담임상심리센터	이혜정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3 비즈웰종로오피스텔 517호	02-765-9700
	경인심리건강센터 (cbpsy.cafe24.com)	이봉건	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52 네이버시티빌딩 201-1호	032-321-2841
	과천임상심리연구소 (http://encourageyou.modoo.at)	윤수연	경기 과천시 중앙로 137, 4층 404호	02-3418-0502
로템심리학습상담센터 (http://rodemplc.modoo.at)	오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 스위트 514,515호	031-904-4569	
세움심리상담센터 (http://seummind.modoo.at)	강은영	경기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87번길 43-33, 301호	031-202-3812	
심리상담센터 폭신폭신킨 (pogsinpogsin.modoo.at)	조혜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6 서현프라자 506호	031-915-1456	

권역	기관명	전문가	주소	전화번호
수도권	심리클리닉 아이진 (www.izin.co.kr)	김진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4 삼라미아다스빌 505호	010-4667- 2327
	이든샘가족아동청소년상담소 (www.안양심리상담.kr)	손혜련 이소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평촌아크로타워 A동 1211호	031-478- 9958
	파크심리상담센터 (blog.naver.com/hbs8286)	박상미 유 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중앙노블레스 6층	031-405- 8255
강원권	지우심리상담센터 (www.wisefriend.co.kr)	성태훈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380 노빌리티타워 301호	033-744- 1579
	심리상담센터 아킴	신정원	강원 춘천시 거두택지길 8 2층	033-263- 1155
충청권	손애리심리연구소	손애리	대전 서구 둔산로 133 현대아이텔 418호	010-4174- 0060
	학습&마음심리상담센터 (www.학습과마음.kr)	이철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 3길 3 202호	041-558- 3837
	휴심리상담소 (http://cafe.naver.com/ sooknam)	고숙남	충북 청주시 서원구 두개비로 20번길 72 203호	043-288- 7057
경상권	강박사심리센터 (www.강박사심리센터.com)	강종구	부산 수영구 연수로 332-1 대한빌딩 4층 501호	051-703- 2870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 (www.smphc.org)	최정민	대구 달성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306호	053-657- 6571
	참마음심리상담센터 (www.cmaum.com)	문가인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1번길 16	054-276- 9175
전라권	심리건강연구소 (www.cnupsy.org)	김석웅	광주 동구 남문로 758 2층	062-512- 0039
	최영미마음상담센터 (www.happychoi.or.kr)	최영미	광주 북구 동문대로 111 이상클리닉빌딩 4층	062-263- 7942
	온다라심리교육상담실 (www.councenter.com)	강희양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영진빌딩 5층 501호	063-273- 5496
제주권	내마음의평원 심리상담센터 (www.pgofmind.com)	김현정	제주시 연화중길 12-9 301호	070-4213- 8080

※ 참여 기관은 각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심리상담 안내페이지 확인 후 신청 요망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예술계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성폭력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 신고상담은 예술계 종사하는 피해자, 대리인(개인 및 관련 단체 등) 모두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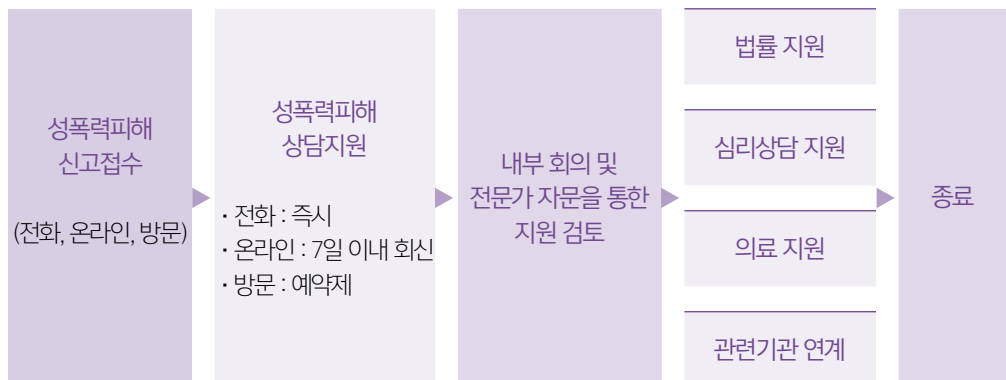
지원내용

-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지원
- 연계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법률지원	·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 연계 성폭력 피해 관련 법률상담 지원 · 성폭력피해 관련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심리상담 지원	· 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의료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여부 결정 후 해당 의료기관으로 통보, 비용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
관련 전문기관 연계	·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안내

- ※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진행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검토·연계합니다.

지원절차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상시 (단, 예산 소진 시 피해지원은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전화: 02-3668-0266, 02-1670-5678(3번) · 상담 시간: 평일 9시~18시 (휴게 시간: 12시~13시)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게시판 상담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 이메일 상담신청: withu@kawf.kr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상담공간에서 전문 상담사와 상담진행 ·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진행

·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02-3668-0200, www.kawf.kr

예술계 성폭력 예방 지원

예술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평등한 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 현업 종사자 (창작/실연/기술지원)
-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예술단체, 사업체 등
- 예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 (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사업내용

-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 교육>
 - 정기교육 : 상/하반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개최
- <현업종사자/예비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 추진절차 : 특강을 원하는 단체, 협회, 대학 (기관)에서 재단에 신청 (협의 후 공동개최)
 - 강사 :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법률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 강의시간 : 1회, 1~2시간
 - ※ 신청기관 및 실제 요구에 따라 강의 내용 및 형식은 다양하게 진행하되, 문화예술계의 특성에 따른 성폭력 문제 발생 원인과 예방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특강신청 대학, 협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 섭외 · 강사료 및 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 장소 및 기자재 제공 · 모집 및 홍보

-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 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양성
 - 교육대상 : 예술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종사자 및 협단체 관계자 (심사 후 선발)
 - 지원내용 : 총 80시간 집합교육 (교육비 무료)
 - 교육이수 후 평가과정을 거쳐 '문화예술계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현업·예비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 수시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 신청서 (부서책임자 직인 날인) 1부 작성 후 이메일 제출
(withu@kawf.kr)
-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상반기 중 공지예정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편입, 유지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복지처우를 개선합니다. 또한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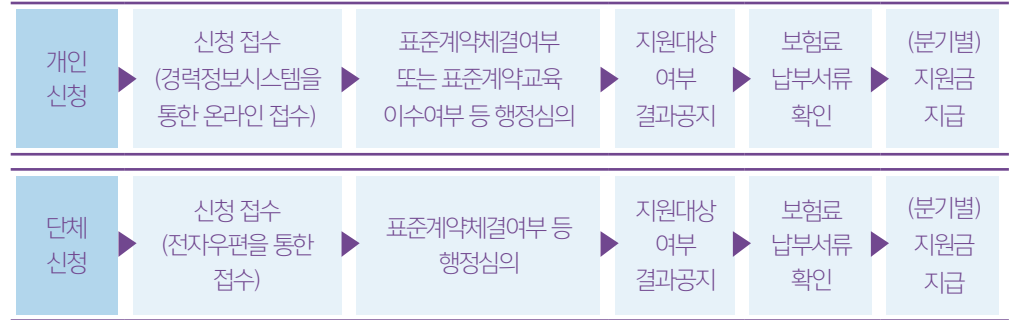
지원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
 -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를 선택하고 관련 서면계약서 자료를 첨부하면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음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40~50%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교육> 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6개월)
 - 지원금 상한액 :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7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근로자인 예술인) 월소득 179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사후 지원
- 지원 범위(예정)
 - 2019년 10월 ~ 2020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4/4분기 ~ 당해년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 ※ 21년도 사업은 전년도 3/4분기~당해년 2/4분기 12개월 지원으로 운영 예정
 - ※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 보험료 지원하며, 사업자는 예술인과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 지원
 -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 임의가입자) 보험료 지원
 - ※ 상세 지원기간, 지원제한 대상, 표준계약 교육이수 관련 상세내용 등은 사업공고문 참조 (3월 중 공고)

지원절차



*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1~3개월 소요

지원기준

- 지원 기준
 - (표준계약 체결)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을 확인하고, 계약이행 여부 및 보험료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원 적합성 검토
 - (표준계약 교육이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하는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여부 및 보험료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원 적합성 검토

제출서류

제출서류	예술인(개인) 신청		단체(회사) 신청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신청서	· 신청서 및 동의서 (단체신청 시 근로자인 예술인 개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계약 (교육) 확인서류	· 표준계약서 및 계약이행 확인자료 (입금내역 등) · 표준계약 교육 수료증(해당자)	· 표준계약서 · 월별 급여명세서	· 표준계약서 · 월별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납부서류	미제출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통해 납부내역 확인)		·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고용보험 납부서류 (근로자만 해당)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본, 당월산정 보험료의 근로자내역 중 택1 제출 · 고용보험 원납증명원
보험료 환급용 서류	· 통장사본		· 통장사본(회사, 예술인) 및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서류 온라인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 보급 중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p.30 참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3월 예정) ~ 8월 31일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접수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통해 제출
- 문의처
사회보험팀 02-3668-0200, www.kawf.kr

별첨

사회보험료 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 기준)

구분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 상한액	월 43,650원	32,310원	5,740원	32,310원	7,540원
		(합계) 월 38,050원		(합계) 월 39,850원	
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 지원	'20년 최저임금 월 1,795,310원 기준 납부보험료 각 40% 지원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40% 지원과 동일 기준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예술인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 보험료 50~90% 를 지원하여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은 개인(중소기업사업주 가입)으로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과 동시에 산재보험을 같이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 : 가입상담 및 가입대행, 정보변경 등
- 보험료 지원
 - 등급별 납부 보험료 50% 지원
 - 신규가입자 납부 보험료 90% 지원 (* 1등급 선택 시 6개월간)
- 산재보상 상담컨설팅 : 산재 발생 시 보상청구 상담·컨설팅 지원 ('20년 상반기 운영 예정)
- 보험료 지원 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월 보험료 및 지원 금액

등급	실연·창작, 기술지원 예술인		
	월 보험료(원)	재단 지원금(원)	기준보수액
1등급	15,040	13,530 (90% 지원시)	2,061,600
		7,520 (50% 지원시)	
2등급	18,100	9,050	2,480,301
3등급	21,160	10,580	2,899,002
4등급	24,210	12,100	3,317,703
5등급	27,270	13,630	3,736,404
6등급	30,330	15,160	4,155,105
7등급	33,380	16,690	4,573,806
8등급	36,440	18,220	4,992,507
9등급	39,500	19,750	5,411,208
10등급	42,550	21,270	5,829,909
11등급	45,610	22,800	6,248,610
12등급	48,670	24,330	6,667,320

* 산재보험 요율 : 7.3/1,000 실연, 창작, 기술지원 예술인 동일

지원절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보험 가입 신청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가입)
 - 온라인 가입 신청(경력정보시스템 > 산재보험 가입)



-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과 산재보험을 바로 신청할 수 있음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선택 및 예술활동 계약서 첨부, 약 1주 소요)
- ※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가입신청 가능, 단 재단의 각종 사무대행업무 및 보험료 미지원

가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www.kawfartist.kr (경력정보시스템 복지지원 > 산재보험)

준비서류

통장사본 (보험료 환급용)

- ※ 예술활동 계약서는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계약서 미제출)

접수기간


 · 연중 상시
 · 문의처 : 사회보험팀 02-3668-0200, 0284, www.kawf.kr

예술인 산재보험

[별첨1] 보험료 산정 및 납부

$$\text{월 보험료} = \text{월 보수액} \times \text{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 (12개 등급 중 자유롭게 선택)

2020년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061,600	68,720	7등급	4,573,806	152,460
2등급	2,480,301	82,677	8등급	4,992,507	166,417
3등급	2,899,002	96,633	9등급	5,411,208	180,374
4등급	3,317,703	110,590	10등급	5,829,909	194,330
5등급	3,736,404	124,547	11등급	6,248,610	208,287
6등급	4,155,105	138,504	12등급	6,667,320	222,244

* 1등급 : 2,061,600원 × 7.3 / 1,000 = 15,040원, 12등급 : 6,667,320원 × 7.3 / 1,000 = 48,670원

- 등급별 월 보수액은 연도 중에 변경할 수 없음 (매년 12월 보수신고기간에 변경 가능)

- 산재보험료율

- 7.3/1,000 : 실연, 창작, 기술지원 예술인 ※ 출퇴근 재해 요율 1.3/1000을 포함한 요율

[별첨2] 산재보험 주요 혜택

·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치료비 전액 지급
· 휴업급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경우 지급
· 간병급여	치료를 끝내고 장애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도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가입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하는 경우 지급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 기타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고등학교 학비 지원(장해1~7급), 생활안정자금 융자(장해1~9급) 등의 혜택을 일정 요건 하에 부여

재해발생 시 산재보상 청구 절차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진료소견서 포함)를 작성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신청(방문·우편·팩스)
-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시 해당 예술활동 계약서 제출 필요할 수 있음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예술인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예술활동의 복귀와 지속을 도와드리며,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지원신청자격

-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증증질환 우선지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 중 성인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19년 사업공고 기준)

가구규모	5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월)	1,365,600원	2,325,220원	3,008,030원	3,690,830원	4,373,630원	5,056,440원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준 준용)

지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18,800만원	11,800만원	10,100만원

※ 20년 사업 공고 시 위 기준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500만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 (증증질환 우선지원)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초기 질환 진단, 단순검사 등 미지원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구입 지원가능 (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 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 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것에 한함. 최대 3개월 200만원 이내 지원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하며 가족관계, 재정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만 중증질환에 대하여 지원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지원제한

- 동일한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선정-지원을 받은 예술인 (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 * 지원종료 후 1년을 경과하면 재신청 가능
- 기 결제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 (의원, 보건서 등)에서 일회적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진료비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수술·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단순검사 등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아 중복지원이 예상되는 경우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된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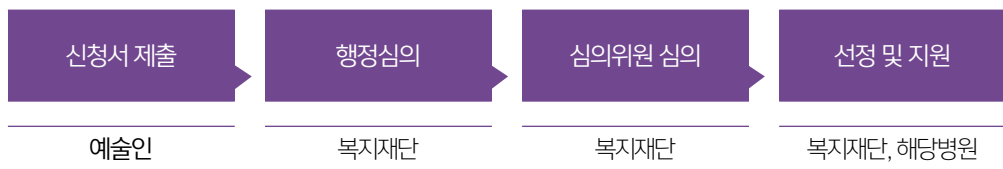
- 신청기간 : '19.10. ~ 20.3.6. (* 20년 상반기 신청접수 재개 /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 가능)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03088)

예술인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질환상태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중간계산서)	치료 진행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제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가구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 *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보험가입여부	· 보험가입조회서	

지원절차



-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3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 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의료비 지원 방식

-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확정 후이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결정 시 신청 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복지장부 사회복지팀 02-3668-0200 www.kawf.kr

[별첨1]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접수서류	발급장소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 발급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해당 의료기관
주민등록등본	민원24 www.minwon.go.kr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주민센터
과세증명서	민원24 www.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	민원24 www.minwon.go.kr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홈택스 www.hometax.go.kr	지역 세무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은행
보험가입조회서	내보험 찾아줌 count.insure.or.kr	

예술인생활안정 자금(용자)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을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운영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대출상품 운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유효기간3개월 이상)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홈페이지 신청 또는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대출
 - 대출한도는 최고 500만원이내이며 단,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300만원이내
 - 이율 2.2% (2019년 4/4분기 기준), 연체이율 5.2% (대출금리에서 3% 가산)
 - 상환기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선택 가능)

용자 종류	용자요건	신청기한
의료비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산후 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대출 최소 금액: 50만원)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or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장례비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or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혼자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학자금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학사) 신청자 및 자녀의 수업료 * 한학기 수업료의 영수금액기준으로 대출금 승인 (대출 최소금액 50만원)	재학기간 중
긴급생활자금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는 최고 8,000만원이며 임차보증의 80%이내
- 이율 1.7% (2019년 4/4분기 기준) 연체이율 4.7% (대출금리에서 3% 가산)
- 상환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 (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용자 종류	용자요건	신청기한
전세자금	1. 전세자금에 대하여 대출 ※ 월세, 반전세 해당없음 2. 전세대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에 한함. ※ 해당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 될 수 있음 3. 임차전용면적은 85m ²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m ² 이하) 4. 신청 및 입주기간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홈페이지 공고 확인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용자)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생활안정자금대출

- 신청접수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누리집 (<https://www.artloan.kr/>) 및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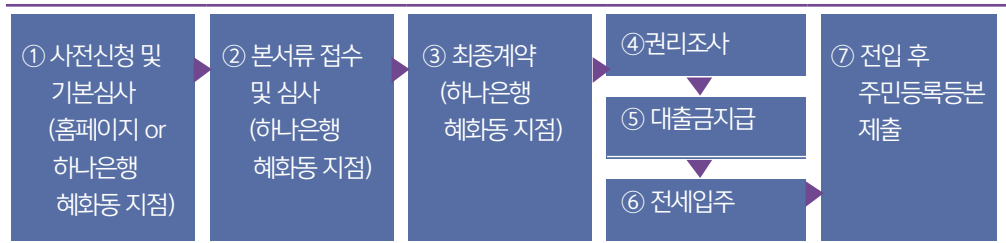
지원절차



예술인생활안정 자금(용자)

· 전세자금대출

- 사전신청 및 기본심사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 누리집 (<https://www.artloan.kr/>) 및 KEB하나은행 혜화동지점 방문
- 본서류 접수 및 심사 : 기본심사 통과자에 한해 본 서류 접수 및 심사 진행
- 권리조사 기관을 통한 대출 적격성 확인 절차 진행
- 대출금 지급



제출서류

· 생활안정자금대출

용자 종류	제출서류	공통서류
의료비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② 진료비청구서 (영수증) (산후조리원 또는 요양시설)	
부모요양비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② 요양시설 비용증명서 (영수증)	
장례비	① 장례식비용 증명서 (영수증) ② 사망진단서 or 사망확인서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② 주민등록등본
결혼자금	① 혼인관계증명서 or 예식장계약서 or 청첩장 or 예식장 * 혼인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③ 소득금액증명서 or 원천징수영수증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개인정보동의서 (제3자)
학자금	① 등록금고지서 ② 고등학교, 대학(교)의 합격통지서 or 재학증명서	
긴급생활자금	① 사실관계확인서 ② 용자추천서	

· 전세자금대출

절차	서류명
1차 (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분증사본 ② 전세대출 신청서 ③ 개인정보동의서 (본인) ④ 전세자금대출 제한요건 체크리스트
2차 (1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소득금액증명원 ⑧ 개인정보동의서 (제3자) ⑨ 부동산등기시행 전부증명서 ⑩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⑪ 계약금 영수증 (보증금 5%이상 납부) ⑫ 건축물대장 ⑬ 부동산공제증서 ⑭ 위임장 (대출금지급) ⑮ 위임장 (포괄) ⑯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⑰ 근질권설정계약서
3차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⑱ 약정서 (전세) ⑲ 자동이체신청서 ⑳ 금융교육이수증

예술인생활안정 자금(용자)

제한조건

· 전세자금대출

구분	제한조건
생활안정자금대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 중인 사람 2)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3)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4)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 (본인이 아닌 경우) 5) 긴급 생활자금인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전세자금대출	<p>· 공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 중인 사람 2)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3)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완납 후 신청 가능 4)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 (본인이 아닌 경우) 5) 임차전용면적은 85㎡ 초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p>· 임차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2) 전세물건 (임주예정주택)에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자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4) 공동 임차인 5)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p>· 임대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공공임대사업자는 가능) 2) 외국인 및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3)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4)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자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III. 예술활동증명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인을 위한 사업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술활동증명	060
예술인패스	062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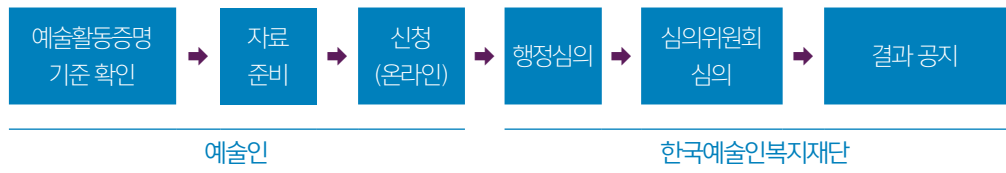
※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 자격 조건

신청자격조건

- 11개 예술분야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최근 일정 기간의 ① 예술활동 혹은 ②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한 예술인
-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6조)

예술활동증명 절차

예술활동증명 진행 절차



※ 신청인이 선택한 예술분야의 심의위원이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검토하오니, 예술분야를 신중히 선택해주시요.

- 심의위원회 운영
 - 문학, 미술 (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 (일반,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 (방송, 공연), 만화 총 11개 분야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심의 진행
 - 심의위원회 결과 : 심의완료 후 문자 및 이메일로 개별 결과 통보

제출서류 및 자료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분야 및 기준별 자료 제출
 -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공연 포스터, 리플릿, 도서, 앨범, 계약서 등 공개 발표된 실적 자료 (참여예술인 이름(예명확인자료필첨)·역할·제목·일시·장소·주최사 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
 - ※ 예술분야 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확인 (별첨 참조)

- ② 예술활동 수입최근 1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20만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 그리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공연 포스터, 리플릿 등)
- ③ 기준 외 활동 경우
- 원로예술인 (만70세 이상)은 그 동안의 경력 자료 (언론보도 내용,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 경력단절예술인은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 단절 이전 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 ※ 예술활동이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② 예술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 활동증명 절차 완료를 원하는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
- ④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가입 / 불공정행위 (구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해당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사본 첨부 필수)

신청방법 및 결과공고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www.kawfartist.kr>, 회원가입 필요)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www.kawf.kr) ⇨ 예술활동증명 ⇨ 신청 방법 및 자료 안내)
- (결과안내) 문자 및 이메일 안내

문의처

- 예술인지원팀 02-3668-0200, www.kawf.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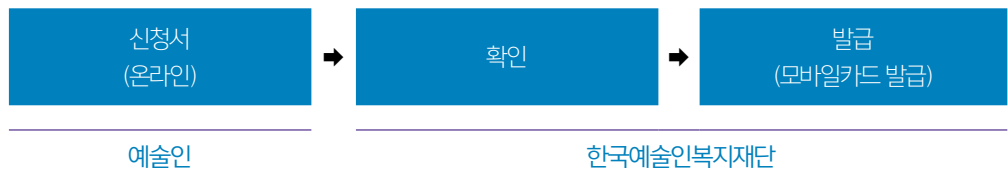
예술인패스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의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예술인패스 발급절차



-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자격증 첨부
- ※ 미술관, 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 재단 확인 후 모바일카드 발급

모바일카드 확인 및 사용하기



※ PC, 모바일 환경에 따라 예술인패스 카드 시안이 다소 상의할 수 있음.

<모바일 카드 확인방법>

- 예술인 패스 누리집 (<http://artpass.kawf.kr:9090>) 접속
(※ PC 및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
- '발급확인' 페이지선택 ⇨ ID / 비밀번호 정보 입력 ⇨ 로그인 완료
※ ID 와 비밀번호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www.kawfarist) 동일

- "모바일 카드" 발급 정보 확인 ⇨ 성명, 생년월일, 분야
- "모바일카드" 화면 캡처 ⇨ 사진첩 저장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사용
 -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아이디가 여러 개인 경우 '모바일카드 미발급' 상태로 확인 될 수 있음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가입된 아이디 조회가 가능합니다.

혜택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제공
- 매월 할인 혜택 정보 제공 (이메일)
- ※ 상세한 할인 및 혜택 사항은 예술인패스 홈페이지 (<http://artpass.kawf.kr:9090>)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발급주기) 월 2회

문의처

- 예술인지원팀 02-3668-0200, www.kawf.kr
- 예술인패스 홈페이지 <http://artpass.kawf.kr:9090>

[별표 1] <개정 2016. 5. 4.>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 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사람도 포함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p>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 사진, 건축	<p>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음악, 국악	<p>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예(演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별표 1] <개정 2016. 5. 4.>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만화	<p>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p> <p>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세부 기준	<p>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p> <p>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p>
비고	<p>제1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2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p>

[별표 2] <개정 2016. 5. 4.>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제2조의3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구분	유효 기간
문학	별표 1 제1호 세부 기준란(이하 "세부기준란"이라 한다)의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음악, 국악	-	3년
무용	-	3년
연극	-	3년
영화	세부기준란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세부기준란 나목,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연예(演藝)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세부기준란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만화	-	5년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효 기간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인 사람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년
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3년
다.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3년

3.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16. 5. 4.>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제정 2014.12.1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4호
 개정 2015. 5. 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개정 2017. 3. 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개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2장 신청

제3조(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 (이하 “협·단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

제4조(협력 협·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제5조(협력 협·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① 협력 협·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②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방법) 예술 활동 증명의 심의방법은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행정심의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한다.
2.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제1호에 따라 부합된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제9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복합 심의 등) ①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인정기준

제11조(예술 활동의 범위) 예술 활동은 국내외에서의 예술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예술 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①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최근’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인 미술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일자가 2014년 7월 1일이라면 ‘최근 5년’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 까지로 한다.)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② ‘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③ ‘1장’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④ ‘1회’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⑧ 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

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블로그 등의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②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스태프 중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제17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고 교양·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한다)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잡지 등을 말한다.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

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 ⑥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⑧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⑨ 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①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청소년극, 교육

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관련 매체에 공표된 창작물을 말한다.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펜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5조(소득 기준) 보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예술 활동의 완료를 전제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개인에게 귀속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6조(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① ‘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제27조(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① ‘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력 단절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 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 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 ⑤ 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 ①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이란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작업 방식이 특수한 예술인을 말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예술 활동 실적을 근거로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해당 분야의 기준을 따른다.

제29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확인을 근거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 활동 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불공정행위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장 효 력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35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발행일 2020년 1월 18일(토)

발행인 정희섭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 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대표전화 02-3668-0200

홈페이지 www.kawf.kr

기 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